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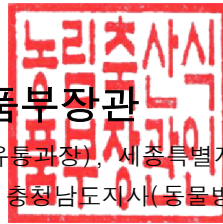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육용종계의 종란 생산주령 제한 규정 한시적 적용 예외 지정 알림

1. 관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육계협23-131(2023.12.26)호.
2. 최근 고병원성 AI 확산 등에 따른 육계 수급불안이 우려되어 원활한 병아리 공급을 위해 육용종계 생산주령 제한 규정의 한시적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산자단체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병아리 수급 안정을 통한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육용종계 생산주령 제한을 한시적 적용 예외(사용기한 없음)함을 알려드립니다.
* 하반기는 수급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추가적으로 결정 예정
4. 각 지자체 및 협회는 계열화사업자에게 육용종계 종란 생산주령 제한을 연장하였음을 공지하여 주시고, 병아리 공급 시 종계 주령을 계약농가에게 철저히 고지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축수산과장), 충청남도지사(축산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축산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축산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축산과장),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위생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경기도지사(축산정책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축산과장), 전라북도지사(축산과장), 광주광역시(농업동물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친환경축산정책과장), (사)한국육계협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주무관	김주영	사무관	민동명	축산경영과장	이연섭	2023. 12. 26.
협조자						
시행	축산경영과-6623	(2023. 12. 26.)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339	팩스번호	044-836-0127	/ rlawndud1@korea.kr	/ 대한민국 공개	